◉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13호

과태료 부과 통지

「약사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04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 (업종)	대상	소재지
주식회사 큐텍 (의약외품제조업)	제조관리자 이*제	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25A동 2층(제1공장)

2. 처분사항

○ 과태료 50만원(납부기한: 2022. 6. 7)

*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(053-589-2798)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처분사유

○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(2021. 10. 27.까지 미이수)

4. 근거법령

○「약사법」제37조의2(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

○「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[별표3] 과태료의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차목

5. 기타사항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
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
다.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
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

○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Tel : 053-589-2709, Fax : 053-592-2709, E-mail : mindscape@korea.kr)